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민갑룡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1 FAX 041-968-2989

권 두 언

가정폭력 재판과정에서 경찰작성 증거서류의 중요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연

연구특집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의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이완희

경찰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박재풍

해외경찰탐방

프랑스 경찰의 국제형사공조시스템
- 부처협업형 모델로 국제형사공조 활성화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장성수

외부기고

민간인에 대한 군사·일반 법원 간 범죄별 재판권 관할에 대한
대법원 결정검토

육군 5사단 헌병대대 군사법경찰관
소령 김 호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공지사항
연구관 동정 및 인사

가정폭력 재판과정에서 경찰작성 증거서류의 중요성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지연

논의의 시작

필자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에서 가사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다.

필자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이나 경찰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지 못하고(설사 수집된 경우에도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두려움과 악연을 빨리 끊고 싶은 심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조차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오직 이혼만 시켜달라면서 빠른 재판진행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제출하기 어려운 이혼재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혼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재판과정에서 있어 경찰의 객관적인 현장증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필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경찰의 현장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재판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 가정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집·제출하는 증거의 특징 및 경찰작성 증거서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의 개요

<사 례>

- * 원고(여자)와 피고(남자)는 결혼 35년 된 부부로, 자녀는 2명이다.
- *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2003. 식당에서 옆자리의 손님이 원고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온몸을 구타하였고, 목격자가 A경찰서에 신고하였다.
- * 2013. 원고의 가게에서 손님이 기계를 수리하여 주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가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여 B경찰서에서 출동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원고가 쓴 일기, 상처 사진, 진단서, 딸과 지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 A, B경찰서 신고 및 출동 상황과 관련하여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다.
- * 2003. 사건의 A경찰서는 회신하지 않았고, 2013. 사건의 B경찰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고, 출동 경찰관(인적사항 미특정)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치하여 없다'는 취지로 간단히 회신하였다.
- * 원고가 빠른 재판종결을 위하여 제1심은 이 상태로 종결되었다.

사례의 분석

가. 이혼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 제출증거의 특징

이 사례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음에도 스스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법정에서 배우자를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며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피해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일부 증거 중 ① 일기에는 날짜와 구체적인 가정폭력 사례가 기재되기는 하였으나 소송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으로서 객관성이 떨어져 증거가치가 크지 않았고, ② 상처 사진은 촬영일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그 상처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③ 의사 작성의 진단서는 수상 및 내원일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특정되나 상해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고, ④ 딸과 지인의 진술서 또한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보다는 피해자로부터의 전문진술의 비중이 컸다. 이처럼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나 객관성이 떨어져 증거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객관적인 추가 증거제출을 요구받고 A, B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¹⁾ A, B 경찰서는 사실조회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빠른 재판진행을 호소하여 제1심에서는 형사기록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나 증인신문을 하지 못한 채로 변론이 종결되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피해자는 제2심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이 사회적 약자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에서 판사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1)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본인소송의 경우 사실조회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절차를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함.

못하거나, 수집된 증거도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인 원, 피고나 판사는 재판진행을 위해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해 경찰작성 증거서류의 추가 확인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나. 경찰 작성 증거서류의 중요성 (경찰사실조회 회신을 중심으로)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A, B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면서 112 신고내역의 유무와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신고내용 중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112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원, 피고의 구체적인 상태, 당시 경찰이 원·피고에게 취한 조치, 고소나 고발 관련하여 당사자의 언동 및 경찰의 대응,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관련된 자료의 송부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조회사항을 제출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모두 채택되어 각 경찰서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A경찰서는 사실조회에 대해 일체 회신을 하지 않았고, B경찰서의 회신내용은 『*현장 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출동경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출동경찰관은 피고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에 인계하였습니다. 모든 기록은 00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소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진술조서 원본 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폭행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전부이다.

B경찰서가 사실조회에 응하여 조회사항별로 회신하긴 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한 조회사항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이 객관성을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가 당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에도 이러한 회신으로는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원·피고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²⁾

특히 가정폭력 현장출동시 사건이 경미하거나 화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화되지 않더라도 향후 재판상 이혼절차가 시작되면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인할 형사기록도 없기 때문에 현장출동 경찰이 112관련 현장상황 등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유지하고 사실조회시 제출한다면 이혼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검찰 송치 등을 이유로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라도 출동경찰관의 인적사항 및 기억하는 정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회신하여 준다면 출동경찰관을 증인소환하는 경우도 줄어들어 증인출석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는 경찰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으나, 기록이 검찰에 보관되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판사가 받게 되는 서류는 대부분 경찰 작성 증거서류이다. 검찰에서 작성되는 서류는 경찰 작성 서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상황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없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므로 결국 경찰 작성 증거서류가 가정폭력 이혼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찰 작성 증거서류에 담긴 가정폭력 인지 경위, 당사자 혹은 목격자의 태도나 발언 내용, 현장상황, 사진 등 현장 출동시의 제반 정황은 객관적인 증거가 희소한 가정폭력 이혼재판의 특징상 판사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³⁾.

2) 추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건 기록에도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112신고 처리 관련 현장상황이나 경과들이 잘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심증형성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보다는 112신고 당시의 현장상황 등이 오히려 객관적 증거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3) 민·형·가사사건을 막론하고 경찰이 작성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면 판사는 법원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

맺음말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제출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이혼재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경찰이 작성한 증거서류나 사실조회 회신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재판과정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고, 그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판사의 중요한 검토대상이 되어 판결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하는 경우 그 현장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보존하고, 이혼재판과 관련되어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개별 조회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회신을 하여 주고, 부가적으로 출동경찰관의 인적사항이나 그의 기억, 기타 경찰에 남아있는 자료를 조회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성실히 회신을 하여 준다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원·피고에게는 물론이고 이혼여부나 위자료 액수를 판결하는 판사의 소송 진행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작성한 증거서류가 추후 진행되는 가사재판실무에 깊은 연관을 맺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가정폭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좀 더 원활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글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SI](#)

다 훨씬 세밀히 검토한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의 비교연구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이완희



들어가며

한국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과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비행의 원인을 정신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연구자들은 선천적, 유전적 결함 때문에 비행 및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후천적, 환경적으로 어릴 때의 좋지 못한 환경, 가정학대, 부모의 비밀관적인 양육방식, 범죄성향의 또래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 등을 그 주된 이유로 지목한다.

어떤 시각이나 관점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없지만, 어떤 이론이나 시각이 대항적인 이론들과의 비교연구에서 더 강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만약 특정한 이론이 다른 이론에 비해 청소년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면, 그 이론에서 제시하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책이나 사후대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된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과 에이커스(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채택해서 그 연구결과물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비행 자료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조사된 횡단적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KCYPS)의 중등패널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중1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표집 방법을 통해 추출된 총 2,351명의 연구대상자를 수집하였고 이후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를 매년 추적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5차년도까지 자료수집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부터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자료에서는 이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될 청소년비행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경비행친구, 중비행친구, 총비행친구 변인들과 일반긴장이론의 우울감, 공격성, 부모학대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즉, 각 각의 경로도에 나타나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통하여 어떤 변인이 청소년비행을 더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

<표 1> 사회학습변인의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잠재성장모형	$\chi^2(df)$	NFI	CFI	RMSEA
비행친구모형	391.256(21)***	.919	.923	.087
경비행친구모형	319.878(20)***	.933	.937	.080
중비행친구모형	279.796(20)***	.915	.920	.074

* p<.05, ** p<.01, *** p<.001

<표 1>에서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이 청소년비행에

연도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3가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형적합도에서 NFI와 CFI가 각각 .90 이상이며, RMSEA 또한 .10 이하이므로 모형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사회학습변인별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비행친구모형			
비행친구 → 비행	.060	.826	20.317***
비행친구 → 비행S	-.004	-.190	-3.028**
비행친구S → 비행S	.038	.839	10.311***
중비행친구모형			
중비행친구 → 비행	.105	.852	5.692***
중비행친구 → 비행S	.038	1.076	4.145***
중비행친구S → 비행S	.131	1.515	5.210***
경비행친구모형			
경비행친구 → 비행	.146	.836	10.995***
경비행친구 → 비행S	-.032	-.536	-5.526***
경비행친구S → 비행S	.055	.713	8.697***

* p<.05, ** p<.01, *** p<.001

<표 2>는 사회학습모형들이 청소년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추정된 결과치이다. 구체적으로 중비행친구와 경비행친구를 포함한 총비행친구 모형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청소년비행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초기에(중2학년) 비행친구와 차별적 접촉을 많이 시도하는 청소년은 그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친구 초기치가 비행의 변화율에 미치는 베타계수는 -.004로 이는 초기에 비행친구를 많이 둔 청소년은 비행의 감소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에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은 그 친구들과 함께 초기에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은 사실이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율이 증감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행친구 변화율은 비행의 변화율에 양(+)의 관계($\beta=.038, p<.001$)를 맺고 있어, 비행친구 변화율이 커질수록 비행의 변화율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경비행친구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경비행친구 초기치가 비행의 초기치에는 $\beta=.146$ 으로 경비행친구를 많이 둔 청소년은 초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비행을 많이 저지르지만 초기치가 변화율에 미치는 경로계수 $\beta=-.032$ 로 초기에 경비행친구를 많이 둔 청소년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율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비행친구 모형에서는 중비행친구와 비행과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중비행친구와 초기에 차별적 접촉을 자주 시도하는 청소년은 초기에 그들과 함께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의 증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비행친구 변화율에서도 변화율이 커질수록 초기에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비행친구와 더 많은 차별적 접촉을 시도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비행친구와 적게 사귀는 청소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반긴장변인의 잠재성장모형별 적합도

잠재성장모형	$\chi^2(df)$	NFI	CFI	RMSEA
우울감모형	179.103(17)***	.952	.956	.064
공격성모형	344.350(17)***	.904	.908	.091
부모학대모형	164.434(25)***	.962	.967	.049

* p<.05, ** p<.01, *** p<.001

<표 3>에서 일반긴장이론의 우울감, 공격성, 부모학대 변인이 청소년비행에 연도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3가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잘 설명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형적합도에서 NFI와 CFI가 각각 .90이상이며, RMSEA 또한 .10 이하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는 일반긴장이론에서 추출된 잠재변인들이 청소년비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나타낸 경로도이다. <표 4>의 우울감모형에서 우울감 초기치는 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에(중2학년) 우울감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초기치 $\beta=.024$)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부적(-) 관계로 초기에 우울감이 높을수록 비행의 감소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4> 일반긴장변인별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우울감모형			
우울감 → 비행	.024	.183	5.298***
우울감 → 비행S	-.005	-.116	-2.588*
우울감S → 비행S	.001	.007	.109
공격성모형			
공격성 → 비행	.085	.326	9.435***
공격성 → 비행S	-.004	-.045	-1.025
공격성S → 비행S	.024	.112	.655
부모학대모형			
부모학대 → 비행	.072	.203	6.211***
부모학대 → 비행S	.021	.179	4.188***
부모학대S → 비행S	.000	.000	-.003

* p<.05, ** p<.01, *** p<.001

한편 우울감의 변화율은 비행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이 높거나 낮아진 청소년들은 비행의 변화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부모학대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부모학대의 변화율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학대의 초기값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초기에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때에 비행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공격성 모형에서는 공격성 초기값만이 비행의 초

기값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 외 공격성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초기에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때 비행을 더 많이 저질렀지만, 비행의 변화율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맺음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소년비행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의 변수들이 한국 청소년비행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각 변수별 잠재성장모형 적합도와 추정치 결과, 사회학습이론의 비행친구, 중비행친구의 모형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긴장이론의 모형적합도는 사회학습이론보다는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6가지 독립변수들이 청소년비행을 각각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비행친구, 경비행친구, 중비행친구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행에 영향력을 미친 초기값과 변화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일반긴장이론에서 추출된 우울감, 공격성, 부모학대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적합하나, 대체적으로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울감과 부모학대의 초기값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변화율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선·황성현, 2013; 이완희·유완석, 2014; 이완희·황성현, 2014; 황성현, 2015; 황성현·이강훈, 2013).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패널 횡단자료를 이용한 황성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학습이론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순으로 나타났다(황성현, 2015). [PSI](#)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법·정책연구실 박재풍

들어가며

최근 경찰관 자살과 관련되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제총기사건에서 안타깝게도 김창호 경감이 순직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은 경찰활동 중에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8월 국회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면서, 경찰청은 2014년부터 트라우마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 4개소의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개소 이후 전국에 설치된 경찰 트라우마 센터에 대한 경찰관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PTSD를 겪는 경찰관 입장에서 본다면, 경찰 트라우마 센터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경찰조직 및 인적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조사의 취지는 경찰관의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경찰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서비스를 받기 전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와 서비스 이용 후 그 결과와의 기대 차이의 인지과정을 거친 평가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이용만족도의 이론은 올리버(Oliver, 1981)의 기대-불일치이론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측정방법은 품질측정을 개념화한 파라슈만(Parasuraman, 1985)의 서브퀄(SERVQUAL)의 측정지표를 사용한다. 서브퀄 측정지표는 기대-불일치이론을 개념화 한 것으로, 그 측정개념은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확신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최근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측정개념은 기대-불일치의 패러다임과 서브퀄의 방식을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는 최근에 자주 이용되는 편의성, 쾌적성, 대응성, 친절성, 효과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표 1> 측정지표의 개요

측정개념	측정지표
편의성	· 센터이용의 용이성 · 예약절차의 편리성 · 이용절차의 편리성
쾌적성	· 시설의 쾌적성
대응성	· 불만족 사안에 대한 대응 정도 · 비밀정보 유지정도 · 홍보/인력/전문성
친절성	· 상담사의 태도의 친절성 · 경찰조직과 경찰관에 대한 공감능력
효과성	·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재방문 의사)

조사시기 및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전국의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한번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경찰관 1,2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수단은 측정지표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조화 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91.3%(929명), 여성이 8.7%(89명)로 전체 경찰공무원의 남녀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41.5%(4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가 28.4%(289명), 50대 이상이 26.1%(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은 경위가 48.8%(497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사 27.5%(280명), 경장 15.0%(1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직경로는 순경공채가 97.2%(98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트라우마 센터의 이용만족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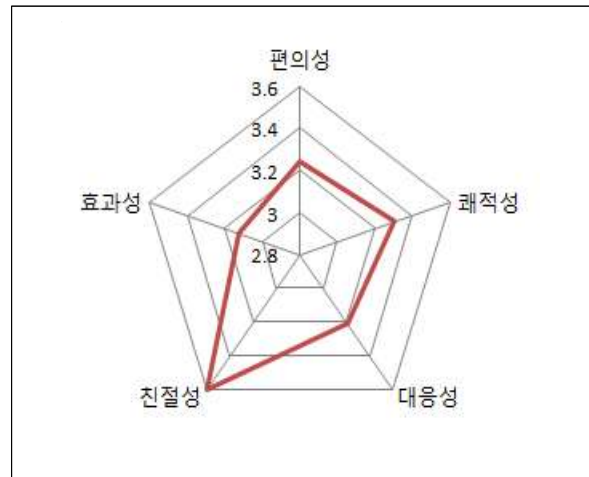
<표 2> 경찰 트라우마 센터의 전반적인 이용만족도

(N=1,018명, 단위: 명/%)

구분		개별문항 평균	전체 평균
편의성	센터이용의 용이성	3.17	3.24
	예약절차의 편리성	3.42	
	이용절차의 편리성	3.42	
쾌적성	시설의 쾌적성	3.30	3.30
대응성	불만족 대응정도	3.20	3.21
	비밀정보 유지정도	3.57	
	홍보	2.85	
	상담인력	2.73	
	상담 전문성	3.69	
친절성	상담사 태도의 친절성	3.86	3.60
	상담사의 경찰조직 공감능력	3.34	
효과성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	3.12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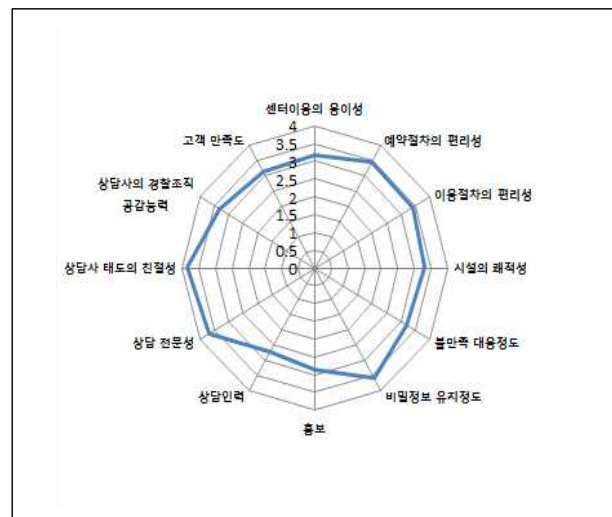
경찰 트라우마센터의 전반적인 이용만족도(각 변수 값의 평균점수)는 친절성(3.60)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효과성은 평균 3.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쾌적성(3.30), 편의성(3.24), 대응성(3.21)의 평균값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전반적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평균



각 변수의 하위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상담사 태도의 친절성(3.86)”, “상담의 전문성(3.69)”, “비밀정보 유지정도(3.5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홍보(2.85)”, “상담인력(2.73)”의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상담인력의 부족 및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그림 2> 서비스의 하위변수의 이용만족도의 평균



아래 <표 3>은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T검증을 통한 인식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표에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계급과 이용경로에 따라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변수 중, 쾌적성, 친절성, 효과성에서 비간부가 간부보다 더욱 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무상담자보다 희망상담자가 이용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변수 중, 대응성, 친절성,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만족도 차이

구분	지표	인구학적 특성(N)	평균 (표준편차)	t
계급	쾌적성	비간부 (481)	3.38 (0.893)	2.42*
		간부 (532)	3.23 (0.960)	
	친절성	비간부 (481)	3.66 (0.833)	1.97*
		간부 (532)	3.55 (0.939)	
	효과성	비간부 (481)	3.27 (1.039)	4.06***
		간부 (532)	2.99 (1.16)	
이용 경로	대응성	의무상담 (799)	3.17 (0.727)	-3.24**
		희망상담 (217)	3.35 (0.718)	
	친절성	의무상담 (799)	3.57 (0.891)	-2.21*
		희망상담 (217)	3.72 (0.877)	
	효과성	의무상담 (799)	3.05 (1.122)	2.42***
		희망상담 (217)	3.39 (1.031)	

* p<.05, ** p<.01, *** p<.001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이용만족도의 평균 값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친절성과 대응성의 만족도가 다른 분야의 만족도 보다 높다는 것은 센터의 종사자인 임상심리사의 상담, 태도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보와 상담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상담인력이 각 센터별로 1명밖에 없으므로 당연한 결과인 듯 보이고, 홍보에 있어서는 트라우마센터에 대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으며, 마음 편히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든지,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담인력의 증원, 홍보의 다각화 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트라우마센터 이용만족도 중 친절성과 효과성에서 비간부와 간부의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비간부에 해당하는 순경, 경장, 경사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시민과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성에 대해 더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트라우마센터의 이용경로에 따른 이용만족도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자발적 이용자가 의무상담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쉽게 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의무상담보다는 자발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센터 이용만족도의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찰 트라우마센터 상담인력의 충원이다.
- 둘째, 홍보의 다각화이다.
- 셋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및 치료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 넷째, 경찰 트라우마센터의 증설이다.

이번 연구는 경찰 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용만족도에 대한 조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앞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PSI](#)

프랑스 경찰의 국제형사공조시스템

- 부처협업형 모델로 국제형사공조 활성화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장성수

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이 가중되고 외국인 범죄 및 해외 도피사범이 증가하여 국제형사공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 경찰의 국제형사공조시스템의 장점을 참고하여, 우리 경찰의 국제형사공조시스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프랑스의 유관부처 협업형 조직구성 및 운용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 경찰 국제공조부서의 조직 및 임무

프랑스는 인터폴(1928), 쉐겐(1995), 유로폴(1996)과 같은 3개 국제공조채널의 각각의 국가중앙사무국(BCN, UCCPI Schengen 및 SIRENE, UNE)¹⁾을 모두 경찰청(DGPN) 수사국(DCPJ, Paris 외곽 Nanterre 소재) 외사과 국제공조계(SCCOPOL)²⁾에 설치³⁾하였다.

경찰, 군인경찰, 세관, 법무부 등 유관부처 합동 근무⁴⁾를 하고 있는 'SCCOPOL'은 프랑스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법집행기관을 위해 각종 국제공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프랑스 법무부 국제형사과(BEPI, Paris 소재)⁵⁾에서 국제공조계(SCCOPOL)에 사범미션(Mission Justice, 검사 1, 검찰서기 1)을 파견하여, 쉐겐정보시스템(SIS)에 정보입력 승인, 쉐겐협약상 월경 추적권, 월경 감시권, 범죄인 인도, 유럽연합 체포영장(MAE) 집행 관련 승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이 '국제형사과(BEPI) 사범미션'은 경찰과 국제공조 업무 관련 긴밀히 협조하며 경찰협력과 사범협력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다. 근무 형태는 검사는 주 1회 와서 근무 하고 검찰서기는 'SCCOPOL'에 상주하여 BEPI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모든 국제공조요청은 '04년 8월 설치된 '중앙 컨택트 포인트(PCC/SCCOPOL : Point de Contact Central)'가 모두 받아서, 인터폴, 유로폴, 쉐겐(UCCPI Schengen) 등 가장 적합한 공조채널을 선정하여 보낸다. 때로는 두 개 이상을 동시 선정하기도 한다.

각 채널 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에 PCC에서 검토하여 채널에 배당한다. 우선, 인터폴은 회원국이 190개국으로 많은 대상국가와 공조를 할 수 있는 반면, 유로폴은 유럽연합(EU)의 한 개의 청(agence)으로 유럽 지역협력(coopération locale)으로 보다 긴밀한 협조를 한다. 또한, 유로폴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으로 대상 국가가 한정되어 있지만, 각 회원국으로부터 오는 마약, 테러, 조직범죄 등 중범죄를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회원국에 분석결과를 배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1) BCN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Bureau Central National), UNE는 유로폴 국가중앙사무국(Unité Nationale Europol), UCCPI는 쉐겐 국가중앙사무국(Unité Centrale de Coopération Policière Internationale), SIRENE은 쉐겐 정보시스템(SIS) 등재 관련 정보 일치(hit)시 추가정보 요청(Supplément d'Informations Requis à l'Entrée Nationale)의 약칭.
 2) SCCOPOL은 국제공조계(Section Centrale de Coopération Opérationnelle de Police)의 약칭으로 휴일 없이 24시간 교대근무.
 3) 형사소송법 D 8-2에 3개 국제형사공조채널 담당부서는 경찰청 수사국(DCPJ)이라고 명시.
 4) 경찰 40명, 군인경찰 25명, 세관 2명, 행정직원 4명, 법무부 2명 도합 70여명 24시간 교대근무 중.

5) BEPI는 우리의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해당, Bureau d'Entraide Pénale Internationale의 약칭.

셴겐 관련 경찰협력(UCCPI Schengen)은 셴겐 회원국 26개국 간 정보교환(CAAS 제39조)⁶⁾, 일반 또는 긴급 월경 감시권(제40조) 및 월경 추적권(제41조), 범죄예방·공공질서 관련 정보 등의 자발적 전송(46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셴겐정보시스템(SIS)상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나 물건(수배자, 수배된 차량, 실종자, 도난 물품 등)에 대한 경보기능(hit/no hit)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PCC를 거치지 않고 각 회원국 Bureau SIRENE에서 처리한다. 신고된 인물이나 물건 등에 대해 일치(hit)하면, 구체적 정보는 SIRENE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평균 5시간 내 요청에 대한 응답을 회신하는 등 신속한 공조가 가능하다.

또한, 3세대 셴겐협정이라는 프림조약(traité de Prüm)은 2005년 유럽연합 7개국⁷⁾ 사이 테러,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어서 프림조약은 2008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결정(décision 2008/615/JAI)으로 유럽연합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프림공조’는 회원국 간 ‘DNA’와 ‘지문’의 전산화 연계로 사건발생 시 대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일치(hit)의 경우, 수사기관은 일치 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통보 받은 결과를 통해, ‘SCCOPOL’을 통해 DNA 또는 지문의 소유자 신원 확인을 위한 국제공조요청을 하면 된다.

‘프림조약 관련 국제공조’도 PCC를 거치지 않고 SCCOPOL 산하 프림공조반(Prüm-UCAP)에서 직접 담당한다.

한국 경찰의 국제형사공조와의 차이점

우리 경찰도 프랑스와 같이 세관, 검찰 등 유관부처에서 인터폴 관련 국제형사공조요청을 공문으로 받아 처리함으로써 인터폴을 활용하는 점은 유사하나, 프랑스

경찰은 유관부처 직원을 직접 파견 받음으로써 보다 원활한 국제공조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경찰청(인터폴계)과 법무부(국제형사과)의 국제 공조범위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폴을 통한 공조는 사실조사에 그치고(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 제1항), 각종 조서 등 일체의 증거 및 이를 위한 증인신문, 압수·수색·검증 등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소관이나⁸⁾, 때로는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일선 수사관들은 적합한 국제공조 채널 선택에 혼선을 빚는 경우 발생하나, 프랑스는 경찰 수사국 국제공조계에 사법미션이 있어 긴밀한 공조 가능하다. 더 나아가 프랑스는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조약 문안에 외교채널(법무부) 외에 긴급한 경우 인터폴 채널 이용 가능하도록 문구 삽입하여 형사사법공조에 인터폴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그 외에 프랑스는 인터폴 외에 유로폴, 셴겐 더 나아가 프림 등의 지역 국제 경찰공조 체계를 함께 구축, 다양한 공조채널로 국제공조를 활발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로는 프랑스는 국립경찰청 국경경찰국(DCPAF)⁹⁾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하나, 우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제도 차이를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 관련 출입국 규제 업무 협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출입국관리)와 협조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국제공조의 주도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보다 유관부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각적 인터폴 채널의 활용으로 국제공조의 신속성을 담보함으로써 국제범죄 대응력을 제고할

6) CAAS는 셴겐협약(Convention d'Application de l'Accord de Schengen)의 약칭.

7) '05년 당시, 독일 주도로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총 7개국 서명.

8) 인터폴 현장(제3조, 제31조)에 의해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성격을 띤 사건이 아닌 한,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규정하여, 사실조사 외에 증거자료 교환 가능하다는 이견도 있음.

9) DCPAF는 국경경찰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Aux Frontières)의 약칭.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경본부, 관세청, 법무부(출입국관리, 국제형사과) 직원의 경찰청(인터폴계)파견은 인터폴 공조채널 이용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해경, 세관, 출입국관리 직원의 파견을 통해 마약, 밀수, 불법입국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 국제형사과 소속 검사 및 검찰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 범죄인 인도 및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조범위에 대한 분쟁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무부(국제형사과) 직원의 파견을 통해, 더 신속한 국제공조를, 법무부(검찰)는 인터폴을 통한 수배 등을 더욱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시, 외교 채널(법무부)과 병행하여, 긴급한 경우 인터폴 채널 활용 가능하도록 문구 삽입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유로폴 같은 지역 치안협력 기구(가칭 아시아폴) 창설을 통해 지역협력 채널의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PSI](#)

민간인에 대한 군사·일반법원간 범죄별 재판권 관할에 대한 대법원 결정검토



육군 5사단 헌병대대 군사법경찰관 소령 김 호

들어가는 말

최근 일반인(예비군 포함)이 범한 여러 죄목 중 군사법원 관할 외에 일반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범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 재판 관할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16. 6. 16 선고 2015초기318)¹⁰⁾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軍 수사기관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어서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 시 관할범죄에 관한 결정

그 동안 대법원은 일반인이 군형법(총기 절취 등) 외에 일반 형법위반으로 경합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위 판단을 뒤집고 일반 형법위반 범죄는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군용물(총기, 탄약) 절취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면 관할법원은 2개로 분할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용물(총기 등) 절취는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되 뇌물수수는 일반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10)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민간인 신분인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16. 06. 16.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 재판권 재정신청 관련 사실 관계 주요 내용 >

피고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 범죄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하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단, 군사범죄인 군용물 절도죄는 보통군사법원이 전속 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권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용물 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재정 결정¹¹⁾을 한 사안임

11) 군사법원법 제3조의2(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 ① 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③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결정의 파급효과 및 의의

이번 대법원 결정의 파급효과가 큰 이유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3도8253¹²⁾)을 뒤집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군사 및 일반법원 양쪽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가 경합되어 기소된 경우 일반인이라도 사건이 이미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일반법원관할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할이 다른 각 범죄는 군사 및 일반법원에 나뉘어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각 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서는 담당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 역시 기소 전에 관할이 상이한 범죄가 포함되는 사건은 최초부터 관할권 있는 수사기관으로 이첩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헌병, 군 검찰 역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군인 신분일 때 군용물(총기, 탄약, 폭발물 등) 절도 및 횡령 범죄와 더불어 뇌물 수수 후 전역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과정에서 뇌물범죄 등을 범하고 전역한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위 두 가지 사례들에 있어서 기존에는 군수사기관이 경합범죄를 모두 군사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헌병과 같은 군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군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건 중에서 뇌물이나 허위공문서 범죄는 일반법원 관할이므로 군수사기관도 경찰, 검찰에 사건을 이첩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수사기밀 보장이 어렵고 사건 진행 도중 군과 민간 수사기관의 중복수사로 마찰 심화와 수사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2) 민간인에 대해 군사법원 관할 범죄(군용물절도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때의 재판권은 사건 계류 중인 군사법원에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이는 결국 극심한 사법역량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혐의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더구나 재판관할 분리로 각 법원(군사, 일반)에서 모두 실형 선고시 먼저 형집행을 하는 수용시설에서 복역을 마치고 재차 다른 수용시설에서 복역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수감 중에 가석방이나 감형, 사면 등의 사안이 얽히고 설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입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¹³⁾

동일피고인에 대한 범죄항목별 상이한 판결가능성

위와 같은 부작용 외에도 일반법원에서는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군사기밀 접근 제한 등의 이유로 혐의입증이 부족하여 일반 형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군사법원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상당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군형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서로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면 일관성 없는 재판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도 오히려 엉터리 재판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기가 조장될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같은 피의자, 피고인의 경합범죄에 대해 재판의 관할이 다름을 이유로이를 부각시켜 고의적 재판지연 신청이 남용될 수 있다.

더불어 군사, 일반법원을 오가는 혼잡 속에 변호인 또한 별도로 선정하게 되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

13) 군사법원에서 실형선고시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에서 실형선고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각각 적용되고 수용시설 관할 부서가 국방부, 법무부로 상이하며 만약 군수용시설에 먼저 수용된 경우 필요시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는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에서는 별도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 언

이번 대법원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절차의 중복으로 기밀유지 어려움이나 사법역량 낭비에 따른 국가손실은 당연한 결과이다.

더구나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관할이 달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불신 초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재판진행에 있어 양분된 사법시스템을 극대화한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 별도 선임 및 중복 소명자료를 수집 등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법원에서 실행선고시 국방부와 법무부가 관할하는 별도 수용시설에서 복역을 함으로 인하여 가석방이나 모범수 기회부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근본적 형사소송의 대원칙과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중복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을 그 어떤 사람이 반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軍, 官 양측 사법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ps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고모집 안내

치안정책리뷰에서는 다양한 치안관련 원고를 모집합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치안관련 논문 요약본
- 치안정책관련 칼럼
- 일선 현장의 이야기
- 해외 경찰관련 자료 및 경찰활동 사례
- 기타 치안정책관련 동향 및 의결

□ 보내실 곳

- 전화번호: 041)968-2392
- e-mail : poong75@gmail.com
- 내부망/메신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박재풍

□ 치안정책연구리뷰 편집팀

- 편집팀장 : 박재풍 연구관
- 편집위원 : 이춘삼 연구관

연구소 소식

◆ **치안논총 발간 및 배포**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중 우수연구로 선정된 5건의 연구보고서를 모아 「치안논총 제32집」을 발간 배포하였다.

연번	제목	연구자
1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장일준
2	민간과학수사 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연구	홍성욱
3	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과 사회서비스직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신준섭
4	분노·충동 범죄 판별 연구	이장한
5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강화 방안	정육상 박주상

◆ **과학기술연구부 워크숍**

과학기술연구부는 9월 1일 ~ 9월 2일(1박 2일) 동안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서 「치안R&D 기획 및 추진전략」, 「연구소 발전 방안 및 과학기술연구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경찰청, 미래부, KIST와 공동으로 국민의 ‘과학치안’ 정책 이해도·공감도 제고 및 R&D 과제 기획을 위해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접수를 받은 결과 일반인(117건)과 경찰관(118건) 모두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고 막을 내렸다.

◆ **치안정책연구(30권 제2호)발간**

치안정책연구소는 10월 11일(화) 「치안정책연구」

제30권 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치안정책연구」에는 모두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연번	제목	연구자
1	수사사무환경이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연구	최대현
2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적정인력산출	임형진 김학신 민경화
3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정 응
4	형사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박호현 김종호 백일홍
5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노섭 장윤식
6	준헌행범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	황순평
7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김동률 이 훈
8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 대응 방안 연구	김윤영
9	경비업법상 민간경비교육 내 무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영우 송수복
10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안윤숙 박길태

연구관 동정

◆ **배순일 과학기술연구부장과 권태형 연구관**은 9월 19일~20일에 걸쳐 「AI 프로젝트 과제 기획 회의」에 참석하였다.

◆ **김영수 치안정책연구부장은** 10월 14일(금) 경찰대학에서 제6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제4세션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모색」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박재풍 연구관(법정책연구실)**은 10월 25일(화) 경찰공제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테러학회 공동 주관의 대테러 전문가 워크숍(「외국공관저 안전협약의 체」 주한 외교사절과 함께하는)에 참석하여 제3세션 “주요 선진국의 테러 대응 및 체계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PSI](#)